

#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 운영규정

□ 제정 : 2020. 7.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장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팩토리 관련 직무 재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요소기술 교육을 통해 신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하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인력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 내에 둔다.

**제3조(직무)** 센터는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1. 재직자 대상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 교육 업무
2.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전반의 역량을 구비한 인력양성
3. 지역사회의 해당 기술 도입을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의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재직자 교육 사업 운영 및 관리

##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 센터는 본교 4차산업기술교육원 내에 둔다.

② 본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③ 본 센터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본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본교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장(및 부센터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7-1-27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 운영규정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 ③ 센터장(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마트팩토리기술인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 장 재 정

**제8조(재정)** 센터의 재원은 교비·산단 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 4 장 기 타

**제10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세칙)** 본 규정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